2024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[수정]

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·지원하는 「20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(창업예정자)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년 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* 의향서 제출은 발표평가 대상자에 별도 안내될 예정
-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. 실명 정보가 SCI(서울신용평가정보)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(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)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실명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 - * K-Startup 누리집 고객센터 온라인매뉴얼 일반매뉴얼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
1 사업개요

- □ **사업목적**: 공공기술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 육성·지원
- □ 지원대상 : 아래 ① 또는 ②번에 해당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*
 - 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2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 - ① 공공연구기관*이 소유(보유)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(팀)
 - *「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6호 해당 기관

- 공공기술플랫폼에 등록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확인한 기술이전 대상 기술*의 활용 계획을 사업계획서 내 제출
- * (예) 특허의 경우,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 사업계획서 내 첨부 제출

◈ 공공기술 활용 검색 플랫폼 현황 예시

- ◇ NTB기술은행, KDB기술거래마트, 테크브릿지, 국가지식재산 거래플랫폼, 미래기술마당, ICT Biz-Bay, 국방기술거래장터,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 정보망,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등
-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·공립·사립대학의 교원, 대학(원)생 등 소속 기관·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*을 활용하 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
 - * 공공연구소(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특정연구기관,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)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 출원(등록)된 기술
 - * 고등교육법 제2조(학교의 종류)에 명시된 '대학'으로 한정하며, 직무발명으로서 대학(산학협력단) 명의로 특허 등 출원(등록)된 기술
- □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(평균 48백만원, 최대 70백만원), 창업프로그램 등

<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내용 >

사업화 자금

기술이전

선정 예비창업자(팀)의 아이디어 구체화,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적정 기술 연계 및 기술이전 계약 지원

(+)

기술이전료, 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

창업프로그램

- ·(기술이전) 기술탐색·매칭, 이전 협상 및 계약 등 지원
- (*) · (창업교육) 창업기초교육
 - (멘토링) ①창업·경영 전담멘토, ②기술분야 전담멘토 등
 - •(기타)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
- □ **지원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('24.3월 ~ '24.11월 예정)
- □ 선정규모 : 총 28명 내외

2 신청자격 및 요건

- □ **신청자격**: 아래의 ①~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
- ① 공고일 ('24.1.12.) 기준 만 39세 이하* 청년이며,
 - *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: 198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 (1월 13일 출생자 포함)
- ② 공고일 ('24.1.12.)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(개인 또는 법인)이 없고,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 (취임)되어 있지 않은 자
 - 단,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(개인사업자) 대표는 아래의 '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'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
<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>

▶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

- 공고일('24.1.12.)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*하는 개인사업자 (법인 불가)로,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 - *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
- ③ 공고일 ('24.1.12.)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/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
- □ 신청분야 :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
 - * 정보·통신, 전기·전자, 기계·소재(재료), 바이오·의료(생명·식품), 에너지·자원 등

□ 신청 제외 대상

- ①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('84.1.12. 이전 출생자)
-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 - < ② 조건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('24.2.5.) 기준) >
 - 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 - 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
 - 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 - 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 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-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 - < ③ 조건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('24.2.5.) 기준) >
 - 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 - 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-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(지원제외 대상 업종 [참고 1] 참조)
-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^{*} 중 [참고 2]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 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- ⑥ '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(기업)
 - * 단,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
 - **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-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-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(신한은행)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(기업)
 - 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- ⑨ '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(사업)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- ⑩ '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- ①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②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- ③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3 지원내용

□ 지원기간 : 9개월 이내 ('24.3월 ~ '24.11월 예정)

□ **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

구 분	지원 세부 내용				
	• 기술이전, 시제품 제작, 지재권 취득, 사업모델(BM)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(평균 48백만원, 최대 70백만원) 지원				
	•	!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·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			
		전부지원사업비 100% (자기부담사업비 없음)			
		비목정의 및 기준 (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) >			
	비목	비목 정의	집행기준		
	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			
	외주용역비	•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		
사업화 자금	기계장치 (공구기구, SW 등)	•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			
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			
	인건비	•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대표자, 대표자와 특수관계인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은 인건비 지급 불가	한도 없음 (양산자금		
	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임차비, 사무실 임대료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, 회계감사비, 법인설립비 등)	사용 불가)		
	여비	 창업기업 대표,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			
	교육훈련비	• 창업기업 대표,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			
	광고선전비	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		
	창업활동비	• 창업(준비)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, 문헌구입,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* 사업자등록 시 해당 비목 사용 불가	월 50만원 한도		

구 분	지원 세부 내용	
창업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	•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* 프로그램 예시 : 기술이전 지원, BM구체화, 창업 기초·실무교육, 멘토링, 네트워킹, 투자유치연계 등 역량강화 지원	
※ 주관기관 지원 프로그램 [별첨 2] 참고		

4

신청 및 접수

< 유의 사항 >

-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("제출완료"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)
 - * 신청·접수는 16:00 정각에 종료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.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은 실명(개명)정보가 SCI(서울신용평가정보)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-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(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,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- 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
-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
- 사업 신청은 **반드시 신청자(예비창업자) 본인이 신청**하여야 하며, **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**
- 신청시 '24년 주관기관인 ㈜로우파트너스 선택
 - *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,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(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)
-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신청이 불가하며,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전체 탈락 처리

□ 신청·접수기간 : '24. 1. 22. (월) ~ 2. 5. (월), 16:00까지

* 공고 기간과 온라인 신청·접수 기간이 상이하니 재확인 요망

□ 신청방법

-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 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등 필요
 - *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[별첨3]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
- □ 제출서류: 사업계획서(기타 증빙서류 포함) 1부 ([별첨 1] 양식)
 - *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 - **기타 제출서류 각 1부** (해당 시, [별첨 1] 내 추가 첨부 제출)

구분	제출서류	제출 방법	비고
① 사업신청서	- 자동 생성	온라인 입력	-
②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			
③ 부동산임대업 보유자(해당시) - 사업자등록증 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- [별첨1] 양식 활용	파일 첨부	용량제한 30MB

5 평가 및 선정

- □ 평가 절차 : 총 2단계 평가 (서류 → 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 - * 선정평가 일정, 단계별 평가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

<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요건검토		
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		
확정		
'24.2월 초		

② 서류평가
(2배수 내외)
제출된 사업계획서
토대로 서류평가
(2배수 내외 선정)
'24.2월 중

③ 발표평가
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
'24.2월 말

4	최	종 선	!정	
선	정	확정	및	
정보	부지	원사업	겁비	
심의	후	최종	공고	
,	'24.3월 중			

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

□ 평가 방법

- ① 요건검토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② 서류평가: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(가점 포함) 하여,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(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

< 서류평가 가점 대상 >

구분	대상자	점수	비고 (제출서류 등)
가점 (최대 1점)	• '22~'23년 혁신창업스쿨 2단계 수료자 - 혁신창업스쿨 최종보고서 아이템 핵심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	1점	제출 불필요 (별도 확인 예정)

- ③ 발표평가 :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,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,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(동 사업 신청자)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
 - * 평가시간 : 25분 이내(발표 15분 내외 + 질의응답 10분 이내)
 - ** 평가방법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

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,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*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%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서류평가 세부내용	발표평가 세부내용
1. 문제인식 (Problem)	시장·고객분석 현황, 창업아이템 개발 목적 등	창업아이템 개발동기·목적 등
2. 실현가능성 (Solution)	진입 목표시장 분석, 제품·서비스 개발방안 등	창업아이템의 차별성, 협약기간 내 실현 가능성 등
3. 성장전략 (Scale-Up)	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추진일정, 자금조달계획 등	성장 가능성, 기대성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
4. 팀 구성 (Team)	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	조직 운영방안, 고용계획, 팀 역량 강화방안 등
5. 기술이전 및 활용 계획 (Plan)	공공기술 도입 필요성, 제품·서비스 적용 방안 등	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 계획 등

□ 최종선정

-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,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사업비*을 배정하여 최종 선정 공고
 - *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-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(통보일 포함, 3일차 17시까지) 이내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정해진 기한 내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(예비후보자)를 선정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 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 - *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**사업 운영일정** 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공 고		예비창업자 신청·접수		요건검토 및 선정평가
중소벤처기업부		K-Startup 누리집		창업진흥원, 주관기관
′24. 1. 12.(금)		~'24. 2. 5.(월), 16시까지		'24. 2월~
	. ,			Û
협약체결 및		협약체결 확인서 제출		선정 공지
사업비 지급		합국제는 복한지 제출		20 0 4
예비창업자, 주관기관,	\Box	에비샤어기	₹	V Ctantura 느미지
창업진흥원		예비창업자		K-Startup 누리집
'24. 3월~		선정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		'24. 3월 내
Û				
사업수행		수시점검 (필요시)		최종보고 및 점검
예비창업자	⇒	예비창업자, 주관기관		예비창업자, 주관기관,
에비형답시		에비중되자, 구천기천		창업진흥원
'24. 3~11월 (약 9개월)		수시		~′24. 12월

6 유의사항

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"형법"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,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, "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" 등에 따라 <u>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</u>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 (대표자, 예비창업자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"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" 제32조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<u>해당자를 고발 조치</u> 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(사업자등록)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*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선정 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'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(협약체결) 불가하며 단, '23년까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 - 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동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(신청자)가 직접 평가과정에(발표평가 등)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평가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<u>3일 이내</u> (통보일 기산, 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여 선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지원사업 서류 및 발표평가 대상에서 즉시 제외됨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 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「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」, 창업진흥원·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
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'신청자격 및 요건'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'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**협약종료 30일 이전 까지**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(사업자등록)을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활용(도입) 기술에 대해 공공연구 기관과 기술이전(양도) 계약을 사업종료기간 내 체결하여야 함
- 공고일 ('24.1.12.) 기준 최근 3년간 폐업한 사실이 있는 선정자의 경우,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 (주업종, 부업종) 기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(사업자 등록)을 이행하여야 함
 - * 최근 3년 폐업 경험 있는 선정자 대상 협약시 이종업종 창업 이행 등 확약 예정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지원 교육 및 사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
-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(www.startbiz.go.kr)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,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*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(종료 후 점검 예정)
 - * 정당한 사유 예시 : 법인전환, 경영부진(동분기 매출 60% 이상 감소), 사업자 양도, 인수합병, 면세포기·적용 등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
- 협약기간 중 신청(대표)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14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동 사업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약 해지 등 조치 될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계좌)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지정 은행(신한은행)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7 기타사항

□ 사업 신청 문의

○ **시스템 문의** : 국번없이 1357

○ 사업 문의 : 사업 주관기관 로우파트너스

주관기관명	담당자 연락처	
로우파트너스	042-867-8814	
도구씌트니_	042-867-8816	

참고 1 지원제외 대상 업종

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 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^{*}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참고 2

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사업 목록

-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
-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
-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(사업화)
- 창업성공패키지(舊 청년창업사관학교)
- 글로벌창업사관학교 (사업화)
- 창업중심대학 (예비창업자)
- 창업중심대학 (초기 창업기업)
- 창업중심대학 (도약기 창업기업)

참고 3

창업여부 기준표

*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: cert.k-startup.go.kr / 문의처 : 1811-3773

구분		창업여부		
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타인으로부터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	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창업아님
	상속/증여	이종	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
개인기업		이종창업	-	창 업
11 전기 법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	-	창 업
	창업(/	나업을 개시한	날부터) 7년 이내	창업 기본요건
		이종창업	-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– 2년 까지	창업아님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	이종창업	-	창 업
법인기업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 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	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
	되기이네 다이	이종		창 업

- ※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 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 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**과점주주**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**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: [®]2020.10.8. 이전에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 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 - [©]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